

●국토교통부령 제126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6호 중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무단으로 원격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증가 등 성능 저하

다.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 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령이 4년 이하인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를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5년을 초과할 때에서 8년을 초과할 때로 늦추는 등 일부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임시 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보고 대상에서 주변상황 인지 장치의 수량 감소를 제외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 변경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